

# 2020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안내문

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

##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이하 “일경험사업” 이란?

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**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**하고, **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**하는 청년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
## 1 지원대상 기업

①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, **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**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**중견기업**

- 조건 : 고용보험법 제 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(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,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)

② 다만, **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**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 시 **사업 참여 가능**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
- 지식서비스산업
- 문화콘텐츠산업
-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- 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

### ◆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

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대표자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)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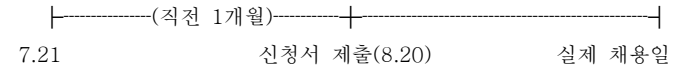
\*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, 개인이면 사업개시일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3조 준용)

## 2 지원요건

### □ 기 업

- ①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채용계획에 따라 아래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
- ②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**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**

<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(예시) >



### ◆ 고용조정 이직

<고용보험 상실사유> 2.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(대분류)

- 23. (중분류)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

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, ②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으로,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, ④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,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용하지 못해서, ⑥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

- 26.(중분류)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

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)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

### □ 청 년

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- 만 18세 미만인 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를 확인
-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② 채용일 현재 **취업 중이 아닌 자**.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취업증인 자료 불

-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
-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\*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
### ③ 근로조건

- (근로계약) 기업과 2개월 이상 **기간제 근로계약**을 체결한 자
- (보험적용)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
- (근로시간)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
- (임금수준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
- (멘토 지정) 청년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 중에서 교육·지도·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·운영
- (교육실시) 청년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업무 지도·교육 등을 실시하고, 월 1회 교육실시현황을 작성하여 관리·제출

### ④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

-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(예: '20.12.20. 채용 시 '21.8.31.까지만 신청 가능)

## 3 지원제외

### □ 기 업

#### ①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
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\*
  - \* 부동산업, 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\*

####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

-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행정기관
-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회,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법원,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재판소,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
###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
### ④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-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(제외기간)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### 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-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사전정보 공표목록 > 산재예방/산재보상 >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- (제외기간)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### ⑥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
###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
- 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 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(예, 조선업)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

###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

### □ 청 년

####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”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
#### ②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” 또는 “일경험사업”에 참여 중인 자

#### ③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
####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-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#### ⑤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

-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
-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

◆ 관련 사업주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4조제4항)

-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 
(예: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)
-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

⑥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

- 다만,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
⑦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

- 다만,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\*한 자는 가능

\*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
\*\* 단,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는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취업 가능

## 4 지원내용

① 참여기업이 2020.12.31.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 지원

② 지원한도

- 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% 이내(최대 30명 상한)에서 채용계획을 수립 가능 \* 소수점 이하는 올림(예, 0.1 → 1명)
-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,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 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
-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 지급되지 않음

## 5 지원수준

①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(최대 월 80만원)와 관리비(인건비의 10%, 최대 월8만원)로 구성

- 다만, 청년의 주 소정근로시간별로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

근로시간	총 지급액	인건비	관리비
30시간 이상	88만원	80만원	8만원
20시간 이상	66만원	60만원	6만원
15시간 이상	44만원	40만원	4만원

②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

- 단,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**Q1. 사업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**

A1.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- ① 참여신청: 기업이 “워크넷-일경험”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
- ② 지원협약: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→ 운영기관-기업간 지원협약 체결
- ③ 청년채용: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
- ④ 채용통보: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
- ⑤ 지원금 청: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

**Q2. 신청 기한이 있나요?**

A2. 기업은 채용계획서 승인 후 `20년말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, 운영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.

**Q3. 하나의 운영기관으로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?**

A3. 원칙적으로 기업은 하나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**Q4. 사업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?**

A4. 참여 신청 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, 기업의 참여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추후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통보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,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: [www.bsef.or.kr](http://www.bsef.or.kr))

\* 5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 해당하는 확인서 필요

**Q5.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, 참여가 가능할까요?**

A5. 참여 가능합니다. 다만, 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는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만 가능합니다.

**Q6. 직무 제한이 있나요?**

A6.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직무에 제한이 있지만,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직무 제한이 없습니다.

**Q7.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**

A7.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, 최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(예시) `20.12.15에 채용시 → `21.8.31까지 신청 가능

**Q8.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?**

A8.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 증빙자료, 자체 업무지도·교육 실시현황 등이 필요합니다.